

##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	----

제출일자 : 2008. 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만  
 공사 소유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  
 른  
 감면조례 정비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  
 후  
 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 (안 제5조의2)
- 나.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인용조문을 명확  
 히  
 명시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범명을 변경코자 함 (안 제7조)
- 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함 (안 제9조)
- 라. 구세조례에서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함

(안 제9조의2)

마.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알기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안 제12조)

바.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함 (안 제14조)

사.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전환코자 함 (안 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승인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481('07.10.4) 및 지방세정팀-2701('07.10.24)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함

라. 입법예고 : 2007. 12. 24 ~ 2008. 1. 13 (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기타 : 표준조례안 시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481('07.10.4) 및 지방세정팀-2701('07.10.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각 호에서 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를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로,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p> <p>3. (생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p> <p>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 -----</p> <p>2. 제1호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 -----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p> <p>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 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 법 제 112조제2항에 따른 ----- ----- ----- ----- ----- ----- -----</p>
<p>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채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p>	<p>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채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라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23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3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